

1. 개정이유

최근 민간 헬리콥터 사고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헬리콥터 안전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위험 경감 및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안전대책 일환으로 만 60세 이상 사업용 헬리콥터 조종사의 신체검사 유효기간을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조종사와 동일하게 6개월로 단축하여 고령 사업용 조종사에 대한 신체검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정비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학과교관의 자격요건 및 항공종사자 조종교육증명, 계기비행증명 심사 응시경력을 명확히 하고, 무인비행장치(드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비행승인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에 사용되는 모든 헬리콥터의 비행기록장치가 개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운송과 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터에 대해 비행기록장치를 대신하여 조종실 비행데이터 등을 모니터 할 수 있는 대체장비로도 운영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09조제1항)

나.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 규제 완화(안 제215조제4항 및 별지 제82호 서식)
그간 회항시간 연장운항은 해당 비행기 형식을 12개월 이상 운용한 경험이 있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승인해 왔으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따르면 해당 비행기를 운용한 경험이 12개월

미만이거나 운용 경험이 전혀 없는 항공사도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이를 도입하고자 한다. 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기간 규제 합리화(안 제308조제3항·7항)

- 1)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동일지역의 비행제한 구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해서는 비행승인기간을 현행 6개월 범위 내에서 12개월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2)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내 중 학교 운동장에서 교육목적으로 정규 및 방과 후에 최대이륙중량 7킬로그램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를 고도 20미터 이내에서 비행시키려는 경우에 비행승인기간을 현행 6개월 범위 내에서 12개월까지로 연장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라. 패러글라이더 및 동력패러글라이더의 기체 이력관리를 통한 예방정비의 적기 수행을 위해 비행시간, 이·착륙장소, 비행 전·후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에 포함(안 제310조제5항)

마. 초급(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 활공기) 조종교육증명과 계기비행증명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비행훈련 응시경력 요건을 조종교육증명을 소지하고 조종교육 비행경험(제125조)을 갖춘 사람과 동승한 비행훈련에 해당하는 경력을 인정해 주도록 함(안 별표 4 제1호나목)

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6개월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을 60세 이상 사업용 조종사까지

확대하여 적용함(안 별표 8)

사. 그간 항공정비사과정 전문교육기관의 학과교관 자격요건 중 항공의학, 심리학, 철학을 전공한 사람에 대해서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공한 사람을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보다 명확히 함(안 별표 12 제9호나목1)가)(3))

아.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2조 및 183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출한 비행계획서 상의 탑승 총 인원 외의 인원을 탑승시킨 경우 의무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 보고토록 함(안 별표 20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헬리콥터의 경우 비행기록장치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체장비로 장착해야 한다.

제109조제5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최대이륙중량이 3천 18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헬리콥터의 경우
4. 1989.1.1. 이전 제작된 헬리콥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3천 18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제165조제1호 중 “제227조제1호”를 “제229조제1호”로 한다.

제215조제4항 중 “운항 개시 예정일 20일 전”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비행기 형식을 12개월 이상 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이하 “운용경험 기반 승인방식”이라 한다) : 운항 개시 예정일 20일 전
2. 해당 비행기 형식을 운용한 경험이 12개월 미만이거나 운용 경험이 없는 경우(이하 “속성 승인방식”이라 한다) : 운항 개시 예정일 180일 전

제30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제30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개월”을 “12개월”로 한다.

제310조제5항제4호 중 “기구류”를 “기구류, 패러글라이더 및 동력패러글라이더”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조종 교육 증명의 초급(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의 응시경력란 (나) 중 “갖춘”을 “갖추고 제125조에 따른 비행경험이 있는”으로 하고, 같은 란의 초급(활공기)의 응시경력란 (나) 중 “소지한”을 “갖추고 제125조에 따른 비행경험이 있는”으로 하며, 같은 목 계기 비행 증명의 응시경력란 (2) 후단 중 “받은”을 “갖추고 제125조에 따른 비행경험이 있는”으로 한다.

별표 8의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활공기 조종사는 제외한다) 부조종사의 유효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2개월. 다만,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

별표 12 제9호나목1)가)(3) 제3호의 자격증명 등란 중 “철학을 전공하고,”를 “철학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가”로 한다.

별표 20의2에 제7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항공기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2조 및 제183조에 따라 제출한 비행계획서 상의 탑승 총 인원 외의

별표 35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누목 2) · 3)”을 “두목2) · 3)”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87조제6항”을 “시행규칙 제87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호 중 “02-3151-1516”을 “02-3151-1500”으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행기록장치 장착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헬리콥터를 소유한 자는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제10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조종교육증명 및 계기비행증명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초급 조종교육증명 및 계기비행증명 한정심사를 받기 위하여 비행훈련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항공신체검사 유효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40조 및 제93조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 증명을 발급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1. 국토교통부/대한민국 (Approving National Aviation Authority/Country): Republic of Korea/ MOLIT		2. 부품 등 감항승인서 AIRWORTHINESS APPROVAL TAG		3. 추적번호(Tracking No)	
4. 명칭 및 주소(Organization Name and Address)				5. 작업지시, 계약 또는 송장번호 (Work Order, Contract or Invoice No)	
6. 품목 (Item)	7. 품명 (Description)	8. 부품번호 (Part No.)	9. 수량 (Quantity)	10. 일련번호/배치번호 (Serial No./Batch No.)	11. 상태/작업 (Status/Work)
12. 비 고(Remarks)					
13a. 위의 품목은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 (Certifies the items identified above were manufactured in conformity to:) ☐ 인가된 설계자료에 일치하며 안전한 작동상태에 있음(Approved design data and are in a condition for safe operation) ☐ 제12호란에 명시한 인가되지 않은 설계자료에 따름(Non-approved design data specified in Block 12)			14a. ☐ 항공안전법 제32조에 따른 정비확인(Aviation Safety Act Article 32 Return to Service) ☐ 제12호란에 명시한 다른 법규에 따른 정비확인(Other Regulation specified in Block 12) 제11호란 및 제12호란(필요한 경우 따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에 기술된 작업은 「항공안전법」 제32조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해당 품목을 항공기·발동기·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함. 다만, 제12호란에 명시한 다른 법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Certifies that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Block 12, the work specified Block 11 and described in Block 12 wa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Aviation Safety Act Article 32 and in respect to the work, the items are approved for return to service]		
13b. 승인자 서명 (Authorized Signature)		13c. 인가/승인번호 (MOLIT Authorization No.)		14b. 승인자 서명 (Authorized Signature)	
13d. 성명(Name)		13e. 일자(Date)		14c. 인가/인증번호 (MOLIT Approval/Certificate No.)	
				14d. 성명(Name)	
				14e. 일자(Date)	
User / Installer Responsibilities					
이 인증서는 부품·구성품 또는 조립품의 장착을 자동으로 승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장착자는 감항당국의 법규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단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 existence of this document alone does not automatically constitute authority to install the part/component/assembly. Where the user/installer performs work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regulations of an airworthiness authority different that the airworthiness authority of the country specified in Block 1, it is essential that the user/installer ensures that his/her airworthiness authority accepts parts/components/assemblies from the airworthiness authority of the country specified in Block 1. Statements in Blocks 13a and 14a do not constitute installations certification. In all cases, aircraft maintenance records must contain an installation certification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regulations by the user/installer before the aircraft may be flown.					

회항시간 연장운항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하단 참조)
------	------	--------------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하려는 승인 방식(선택)	☐ 운용경험 기반 승인방식(In-service EDT0)
	☐ 속성 승인방식(Accelerated EDT0)

면허취득·등록일(또는 예정일)

운항개시예정일

운항예정지역(예정구간, 노선, 공항 명시)

착륙이 가능한 공항명

운항 예정 비행기(형식·등록부호·발동기의 형식 및 모델명)

승인 희망 최대 회항시간

확인 비행 희망일

「항공안전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제4항에 따라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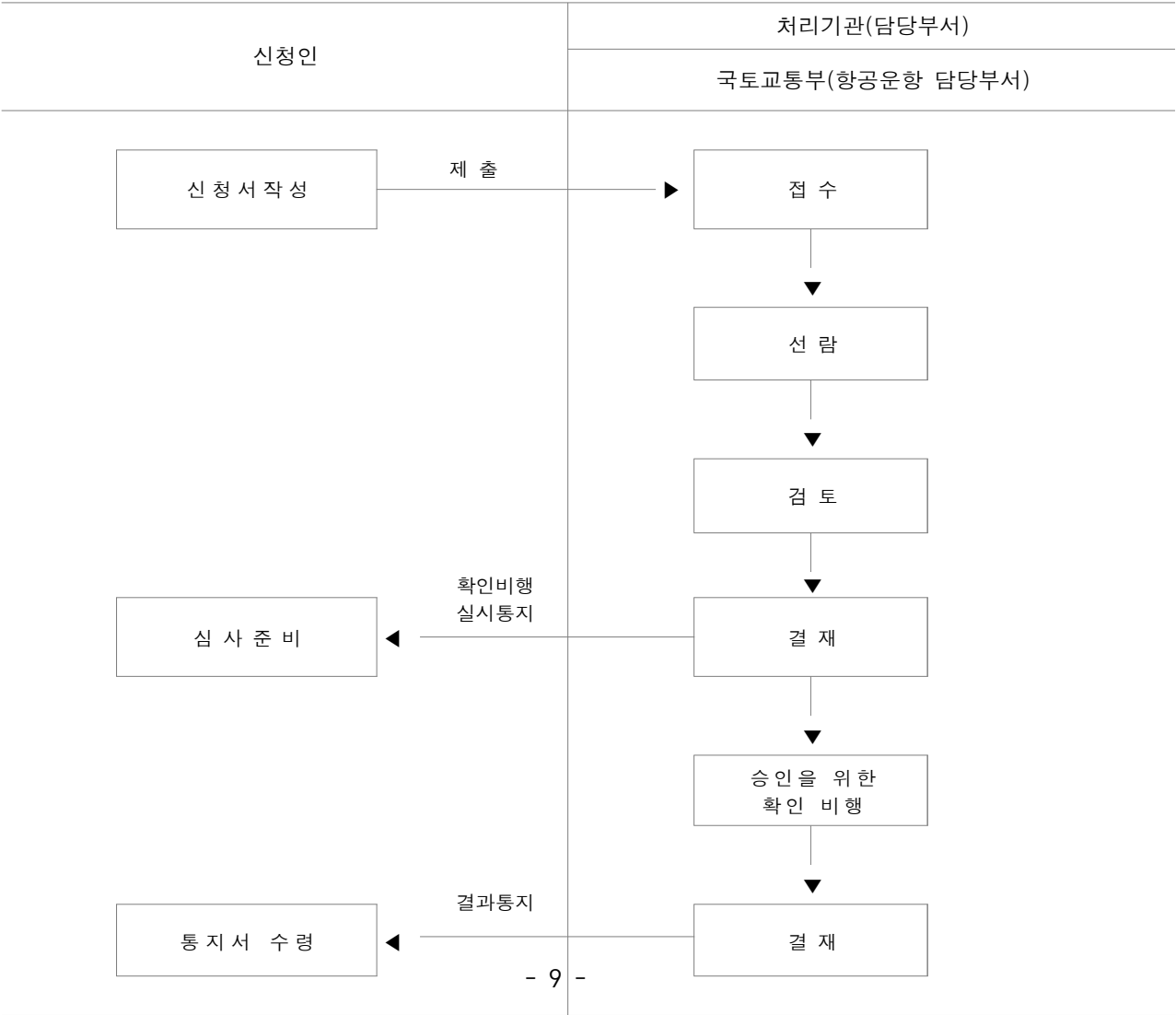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항공안전법」 제77조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처리기간	운용경험 기반 승인방식 : 20일 속성 승인방식 : 180일	- 8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9조(사고예방장치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고예방 및 사고조사를 위하여 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지 않는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u>제2호 및 제3호</u> 의 장치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제109조(사고예방장치 등) ① -- ----- ----- ----- -----. ----- --- <u>제2호</u>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 ----- ----- -----. <u>다만 헬리콥터의 경우 비행기록장치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체장비로 장착해야한다.</u>
1.·2. (생략) <신설>	1.·2. (현행과 같음) 3. <u>최대이륙중량이 3천 18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헬리콥터의 경우</u>
<신설>	4. <u>1989.1.1. 이전 제작된 헬리콥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3천 1</u>

	8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제165조(기압고도계의 수정) 법	제165조(기압고도계의 수정) ---
제67조에 따라 비행을 하는 항	-----
공기의 기압고도계는 다음 각	-----
호의 기준에 따라 수정하여야	-----
한다.	-----.
1. 전이고도 이하의 고도로 비	1. -----
행하는 경우에는 비행로를 따	-----
라 185킬로미터(100해리) 이	-----
내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기관	-----
으로부터 통보받은 QNH[185	-----
킬로미터(100해리) 이내에 항	-----
공교통관제기관이 없는 경우	-----
에는 <u>제227조제1호</u> 에 따른 비	-- <u>제229조제1호</u> -----
행정보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
최신 QNH를 말한다]로 수정	-----
할 것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15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	제215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
인) ① ~ ③ (생 략)	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	④ -----
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82	-----
호서식의 회항시간 연장운항승	-----
인 신청서에 법 제77조에 따라	-----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	-----
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

운항 개시 예정일 2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승인) ①·② (생략)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
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결
과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
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
지는 비행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단서 신설>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

1. 해당 비행기 형식을 12개월
이상 운용한 경험이 있는 경
우(이하 “운용경험 기반 승인
방식”이라 한다) : 운항 개시
예정일 20일 전

2. 해당 비행기 형식을 운용한
경험이 12개월 미만이거나 운
용 경험이 없는 경우(이하 “속
성 승인방식”이라 한다) : 운
항 개시 예정일 180일 전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승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다만, 무인비행
장치의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
에서 승인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⑦ 법 제1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 6. (생략)

⑧·⑨ (생략)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 ④ (생략)

⑤ 「항공사업법」 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사항(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은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의 조종자에게만 해당한다)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가. 탑승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12개월-----
-----.

1. ~ 6. (현행과 같음)

⑧·⑨ (현행과 같음)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사항(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은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 패러글라이더 및 동력패러글라이더의 조종자에게만 해당한다)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가. (현행과 같음)

나.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 ·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다.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사 매뉴얼에 따른 비행 전 · 후 점검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라.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마. 비행 시작 · 종료시간, 이륙 · 착륙장소, 비행경로 등 비행에 관한 사항 5. (생략) ⑥ (생략)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	--